

부산지방법원 2023. 7. 19 선고 2022나677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철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현정

변 론 종 결 2023. 5. 24.

판 결 선 고 2023. 7. 19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. 10. 21. 선고 2020가단30039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. 8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9. 8. 12. 접수 제37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“을 제14, 15호증의 각 기재”를 “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“비추어 볼 때,” 뒤에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.

『피고와 C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』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2) 피고는 C과의 혼인기간이 17년여에 이르고,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는 외에 혼인기간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던 점, 이혼 당시 피고와 C은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, 피고가 C으로부터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, 피고가 혼인기간 중 생활비의 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된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고 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, C은 자산규모 대비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, 이혼의 귀책사유는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채무는 C이 위와 같이 과도한 주식투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과 무관한 채무에 해당하는 반면,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취득일에 마쳐진 사정에 비추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채무로 보이는 점, 이에 피고는 이혼 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제공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(피고는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), 2023. 1. 2.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중 3,000만 원을 상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자료, 양육비,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

기여도 등을 전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,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』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신, 판사 유현영, 판사 서호원

별지

목 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 연제구 L에 있는 J아파트 K동

[도로명주소] 부산 연제구 L

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, 경사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지하 1층 87.3676㎡

1층 340.0485㎡

2층 420.5702㎡

3층 420.5702㎡

4층 420.5702㎡

5층 417.6862㎡

6층 417.6862㎡

7층 417.6862㎡

8층 417.6862㎡

9층 417.6862㎡

10층 417.6862㎡

11층 417.6862㎡

12층 417.6862㎡

13층 417.6862㎡

14층 417.6862㎡

15층 417.686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3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84.989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부산 연제구 I 대 18952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18952분의 45.3441. 끝.

